

동작구의회공고 제2023-54호

「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」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3년 6월 7일  
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

###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## 1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신분 및 권익의 보장을 위해 출장, 해고 등의 제한 휴직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공무원이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.

#### 2. 주요내용

- 가. 공무원 출장 규정을 신설함(안 제2조)
- 나. 공무원 해고 등의 제한 규정을 신설함(안 제4조)
- 다. 공무원 휴가 등의 규정을 신설함(안 제5조)
- 라. 노동조합 및 노사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8조 및 제19조)

#### 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 [주소 :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(노량진동47-2)]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(전화 : 820-1716, FAX : 820-1474, E-mail : kyh06800@dongjak.go.kr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##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하고,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제16조 및 제17조로 하며, 제12조를 제13조로 하고, 제12조, 제14조, 제15조,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(출장) ① 사용부서의 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.

② 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「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」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제14조(해고 등의 제한) 공무직은 형의 선고, 징계 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해고를 당하지 않는다.

제15조(휴직 등) ① 구청장은 공무원이 육아, 질병 등의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4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대체인력을 지체 없이 충원한다.

제18조(노동조합) 공무원은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에 따라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.

제19조(노사협의회) 「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협의회규정에 따라 운영한다.

제20조(종전의 제15조)의 제목 “(인사상담 등)”을 “(고충처리)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&lt;신 설&gt;</p>	<p>제12조(출장) ① 사용부서의 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.</p> <p>② 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「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」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.</p>
<p>제12조 (생 략)</p> <p>&lt;신 설&gt;</p>	<p>제13조 (현행 제12조와 같음)</p> <p>제14조(해고 등의 제한) 공무직은 형의 선고, 징계 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해고를 당하지 않는다.</p>
<p>&lt;신 설&gt;</p>	<p>제15조(휴직 등) ① 구청장은 공무원이 육아, 질병 등의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다.</p> <p>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4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대체인력을 지체 없이 충원한다.</p>

제13조 · 제14조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제15조(인사상담 등) ① · ② (생략)

제16조 ~ 제18조 (생략)

제16조 · 제17조 (현행 제13조 및 제14조와 같음)

제18조(노동조합) 공무원은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에 따라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.

제19조(노사협의회) 「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협의회규정에 따라 운영한다.

제20조(고충처리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
제21조 ~ 제23조 (현행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와 같음)